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8. 3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6. 고병준 의원 외 7인

나. 회부일자: 2024. 8. 19.

다. 상정일자: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8.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남해석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맞춰 본 조례의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 문화예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 고자 함

나. 주요내용

청년의 연령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와 같게 규정함(안 제2 조제1호)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8월 16일 고병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청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개정에 맞춰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수정함.
- 이는 추후에 동일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청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9세 이상 34세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마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	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
하 "마포구"라 한다)에 거주	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청년의 범위를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함으로써 마포구 청년 정책의 수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청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게 되면 구성원간의 동질성이 저하되어 정책별 효과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나, 마포구 청년의 범위에 대한 통일적 운영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정책별로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 층의 구체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의 범위를 설계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 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

붙임 1 청년 관련 마포구 자치법규 현황

ㅇ 조례별 '청년'의 정의

(24. 8. 기준)

연 번	소관부서	조례명	조례상 청년 연령
1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가족돌봄을 하고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2	고용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
3	건축지원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빈집의 활용)「청년기본법」 제 3조제1호에 따라 청년인 사람 (생략)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4	어르신동행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주택의 입주대상)「청년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5	고용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고용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고용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 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관련법령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 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 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